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7. 1.(목) 배포</p>			
보도일	배포 즉시				
담당과	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	담당자	과 장	김정연	(☎ 044-203-6062)
	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팀		사무관	조진행	(☎ 044-203-6053)
			과 장	예혜란	(☎ 02-2100-1304)
			사무관	황오일	(☎ 02-2100-1321)

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’ 국회 본회의 통과 -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-

- ◆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기틀 마련
 - 학생·청년 및 학부모 참여보장, (전문)대교협, 교원관련 단체 등 다양한 추천
 - 상시적 국민의견 수렴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
- ◆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, “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백년대계 교육을 위한 초석, 새로운 시작”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7월 1일(목) 제388회 국회(임시회) 본회의에서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’)」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.
-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므로, 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.
 -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(가칭)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,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.

[법률 추진 경과]

- ‘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’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으며, 20년 이상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.
 - ※ 이회창(2002,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) / 정동영(2007,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) / 문재인(2012, 국가교육위원회), 박근혜(2012, 국가미래교육위원회) / 문재인(2017, 국가교육위원회), 홍준표(2017, 국가교육위원회), 안철수(2017, 국가교육위원회), 심상정(2017, 교육미래위원회), 유승민(2017, 미래교육위원회)
- 지난 19대 국회(2012.5.~2016.5.) 이후 20대 국회(2016.5.~2020.5.)와 21대 국회(2020.5.~)까지 총 1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.
 - * **19대 국회**: 이용섭(2012.10.) / **20대 국회**: 안민석(2016.7.), 박경미(2017.6.), 유성엽(2018.5.), 조승래(2019.3.), 전희경(2019.9.) 박홍근(2016.6.) / **21대 국회**: 안민석(2020.6.), 정청래(2020.7.), 유기홍(2020.9.), 강민정(2020.9.), 정경희(2021.1.)
- 특히, 21대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여, 토론회(2020.11.), 공청회 2회(2020.12., 2021.2.) 안전조정위 심의(2021.2.~2021.5.) 등 충분하고 심도 있는 국회 논의과정을 거쳤다.
 - 이후 국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(6.10.)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(6.30.)를 거쳐 7월 1일(목)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.

[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의미]

- 이번 법률 통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,
 -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다.

-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면,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.
 - 초·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, 교육부는 교육복지, 교육격차, 학생안전·건강, 예산·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며, 고등교육,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.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,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,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다.”라고 강조하며,
 - “내년 7월 정식 출범을 위해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,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환 준비를 확실하게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-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“오랜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.”라고 말하면서,
 - “이제,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,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참고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주요내용

법안명	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
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	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(044-203-내선번호)	과장 김정연(6445), 조진행 사무관(6053)
	국가교육회의기획단(02-2100-내선번호)	과장 예혜란(1304), 황오일 사무관(1321)



참고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주요내용)

- (목적)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 함
- (법적지위)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
- (위원구성) 모든 위원회처럼 대통령 지명(상임위원 1명 포함), 국회 추천(상임위원 2명 포함) 반영하고 사회 각계각층 인사(학생·청년, 학부모 등) 포함하여 총 21명
 - 총 21명(장관급 상임위원장 1명, 차관급 상임위원 2명)
 - : 대통령 지명 5명(상임위원 1명 포함), 국회 추천 9명(상임위원 2명, 비교섭단체 1명 포함),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, 대교협·전문대교협 추천 2명,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, 당연직 2명(교육부차관, 교육감협의회대표)
-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, 위원의 임기는 3년 (1회연임가능)
- 학생·청년, 학부모 위원을 각 2명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고, 위원의 정당가입 금지 및 교수·공무원 등 각 직능별 제한*으로 편중인사 방지
 - * 위원 임명 시 교원, 교수, 공무원, 전문가 등 직능별로 최대 30%로 제한
- (소관사무) 위원회는 3가지 주요 소관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
 - (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) 교육비전, 중장기 정책방향, 학제·교원 정책·대학입학정책·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
 - (국가교육과정 기준·내용 수립 등)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및 고시, 조사·분석 및 모니터링
 - (국민의견 수렴·조정)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 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 구축
- (위원회 조직) 전체위원회, 국민참여위원회(상설), 전문위원회(상설), 특별위원회(비상설) 및 사무처

Q1.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보면 친정부 인사가 많아 거수기 역할에 그칠 우려가 있는데?

- A.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고,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위원 구성 또한 여야 국회 추천, 학생·청년, 학부모 대변자, 교육관련 단체, 대학교육협의회,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,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대표 등 다양하게 구성
 - 또한 특정직능 위원구성을 30% 이내로 제한하고,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엄격히 하여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있음

Q2. 임기 1년을 남긴 정권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교육정책 대못박기 아닌지?

- A.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2002년부터 여야 대선후보 대선공약
-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비전 제시 및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추진 필요
 - 부칙에서 위원회 출범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하여 위원회가 '22년 7월 중순 이후 출범하고,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 또한 차기 정부에서 지명될 것이므로 교육정책 대못박기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